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한기호·이양수·주호영

김성원 • 주진우 • 김용태

김종양 · 김도읍 · 김은혜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 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,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.

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,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(제6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참전유공자(參戰有功者)에게"를 "참전유공자(參戰有功者) 및 그 유족에게"로 한다.

제3조 중 "참전유공자로서"를 "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"로 한다. 제5조제1항 중 "참전유공자로서"를 "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참전유공자로서의"를 "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의"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로"를 "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"로 한다.

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,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참전명예수당의 승계)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에 한정하며, 기타 참전명 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 단서 중 "제6조의3에"를 "제6조의4에"로 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6조에"를 "제6조 및 제6조의 3에"로, "제6조의3에"를 "제6조의4에"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 및 그유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자 및 그유족이"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가"를 각각 "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참전유공자를"을 "참전유공 자 및 그 유족을"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중 "제6조의3에"를 "제6조의4에"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1호의2 중 "제6조의3제3항에서"를 "제6조의4제3항에서"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로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에 공헌	제1조(목적)
하고 헌신한 <u>참전유공자(參戰</u>	출전유공자(參戰
<u>有功者)에게</u> 국가가 합당한 예	有功者) 및 그 유족에게
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	
공자의 명예를 선양(宣揚)하고	
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	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로</u>	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</u>
<u>서</u>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	<u>및 그 유족으로서</u>
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	
다.	
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</u>	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</u>
<u>자로서</u>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	<u>자 및 그 유족으로서</u>
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	
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참</u>	<u>참</u>
<u>전유공자로서의</u> 요건을 확인한	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의-
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	

- ③ ~ ⑤ (생 략)
- 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 ① 제5조에 따라 <u>참전유공자로</u>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 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~ 7. (생략)
 - 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<u>제6조의3(생계지원금)(생</u>략)

		•					
3	\sim	(5)	(현	행괴	- 같	음)	
제5조	.의2	(신	상	변등	등의	신고	등)
1	-				ž	참전유	공자
밎	コ	유	족 🗅	<u>로</u> -			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참전명예수당의 승계)
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
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
행방불명되어 참전명예수당을
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
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참전
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
된다.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
배우자에 한정하며, 기타 참전
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제6조의4(</u>생계지원금) (현행 제6 조의3과 같음)

제11조(권리의 발생시기) 이 법에	제11조(권리의 발생시기)
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	
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	
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	
는 달부터 발생한다. 다만, <u>제6</u>	<u>제</u> 6
<u>조의3에</u> 따른 생계지원금 및	조의4에
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	
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	
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	
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	
제36조(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)	제36조(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	①
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(상속인	
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	
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	<u>제6조 및 제6조의3에</u>
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,	<u>제6조의4에</u>
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	
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	
대한 보조금(이하 "참전명예수	
당등"이라 한다)을 환수하되,	
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	
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	
에는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	
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	
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. 다	

만,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38조(예우의 정지) ① 국가보훈 전 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 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<u>참전유공</u> <u>자가</u> 「형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 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

,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2 ~ ④ (현행과 같음)
세38조(예우의 정지) ①
<u>참전유공자 및 그 유</u>
<u> 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참전유공</u>
<u>자 및 그 유족이</u>

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 다.
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전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<u>참전유공자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<u>참전유공자가</u>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<u>참전유</u> 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(생 략) 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저

세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
의 배제) ①
<u>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</u>
<u>o]</u>
참전유공자 및 그
유족이
<u> </u>
· 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참전유</u>
공자 및 그 유족을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데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와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3의2. <u>제6조의3에</u> 따른 생계지 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 사에 관한 사무

3의3. ~ 8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4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1의2. <u>제6조의3제3항에서</u> 준용

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<u>제6조의4에</u>
3의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∥41조(벌칙) ①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6조의4제3항에서

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 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 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 설한 사람

2.·3. (생략)

② (생 략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